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역외적용 규정 신설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1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6. 13.
-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현행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관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현행법 해석상 국내기업끼리의 하도급 행위의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나, 거래당사자에 외국기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¹⁾
-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원사업자)이 국내기업(수급사업자)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등의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닌 그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내법인 간 하도급거래 계약이라면 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라 할지라도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현행 하도급법 적용 여부²⁾ >

원사업자 소재지	수급사업자 소재지	하도급 계약 내용의 행위지	
		국내	외국
국내	국내	○	○
	외국	×	×
외국	국내	외국사업자 국내영업소 : ○ 외국사업자 국내자회사 : ○ 외국사업자 : ×	×(현행) → ○(개정안)
	외국	×	×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경우 역외적용 규정이 존재³⁾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제카르텔·글로벌 기업 결합 등의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역외적용에 있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해 법원은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⁴⁾하였음. 이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2) 김정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범위에 대한 연구: 국제 하도급거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24, 200: 211-232.

3) 「공정거래법」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466 판결]

는 동 조항의 해석·집행을 행정당국에 의존하게 되어 그 해석이 있기까지 법적 지위의 불안정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를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개정안의 역외적용 규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원사업자가 되는 계약관계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다양하게 제기될 우려⁵⁾도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제적인 규범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역외적용 시 통상이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현재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5) [2024. 1. 25. 2022헌마430]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유형으로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자는 국내 중소기업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거나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업자인 외국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유형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사업자가 그 규모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외국사업자는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중소기업자보다 그 규모나 매출액 등의 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원사업자로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면 외국사업자로부터 제조등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외국사업자인 피조사인들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심사절차종료결정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현행법 적용 가능성 및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⁶⁾

문 의 처
02) 6788-5109

6)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24.6.~24.9.)